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57호
개정	2006. 10. 13	조례 제 832호
	2006. 12. 29	조례 제 858호
	2007. 7. 1	조례 제 885호
	2007. 12. 17	조례 제 911호
	2008. 12. 29	조례 제 967호
	2009. 8. 5	조례 제 1044호
	2010. 4. 29	조례 제 10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사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 정 과	1.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전보 ②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정과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구신설,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용인시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① 연가계획 및 허가 ② 병가 및 공가허가 ③ 특별휴가 허가 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구간 전보제외) ② 7급이하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신규임용 제외) ▪ 승진(시기 및 인원 사전승인) - 전보, 휴직, 복직, 정계, 승급, 겸임, 직위해제,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징계집행 ▪ 근무성적 평정 ▪ 경력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승진(인원 사전승인) ③ 청원경찰 임면 ▪ 전보, 승급, 정계, 면직 (신규임용 제외) ④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고용중지 ① 장학생 선발 ② 장학금 지급 ③ 장학금 지급 정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동조례 제21조, 제22조 동조례 제23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동법 제7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청원경찰법 제5조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용인시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동조례 제7조 동조례 제8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 정 과	5.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규모 지역·직장민방위대 통합 편성 ② 직장 연합민방위대 구성 ③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이전 ·명의 변경 신고 ④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6. 민방위대 지휘감독 및 검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내 직장민방위대대장의 감독 ② 민방위대 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현황 검열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동법 제22조
	7.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②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32조
	8.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민방위기본법 제39조
	9.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민방위기본법 제26조
	10. 민방위 준비 명령	① 민방위 준비 명령	민방위기본법 제15조
	11.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장비물자 관리에 관한 다음에 권한	① 민방위 준비를 명할 시설 및 장비 물자관리 ▪공공용대비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 정 과	1.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의 고지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정세액 제외) ② 부과취소 및 변경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정세액 제외) ③ 납기전 징수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⑤ 물납 ⑥ 분납 ⑦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5조 지방세법 제2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3조 지방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시세조례 제12조 지방세법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 시세조례 제14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3 시세조례 제12조 지방세법 제2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4 시세조례 제12조 지방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⑧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⑨ 채납처분 [과년도 오백만원(가산금 제외)이상 채납자 채납처분 제외] ⑩ 결손처분 [과년도 오백만원(가산금 제외)이상 채납자 제외] ⑪ 관허사업의 제한 [과년도 오백만원(가산금 제외)이상 채납자 제외] ⑫ 시세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채납처분 등의 유예) [과년도 오백만원(가산금 제외)이상 채납자 채납처분 유예 제외] ⑬ 파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 이자계산 ⑭ 시세의 소멸시효	지방세법 제27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시세조례 제12조 지방세법 제28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29조 내지 제100조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02조 내지 제106조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시세조례 제15조 지방세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시세조례 제16조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24조 지방세법 제30조의5, 6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시세조례 제1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 정 과	1.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⑮ 서류의 송달 ⑯ 공시송달 ⑰ 징수촉탁 ⑱ 공탁 ⑲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⑳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㉑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과년도 오백만원(가산금 제외)이상 채납자 제외]	지방세법 제51조 제51조의2 시세조례 제20조 지방세법 제52조 시세조례 제21조 지방세법 제56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31조 지방세법 제62조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00조 지방세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지방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시세조례 제12조 지방세법 제84조
	2.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성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운영	지방세법 제21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5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60조 시세조례 제2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 정 과	3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주택가격 산정 ②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③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④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⑤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⑥ 이의신청 ⑦ 주택가격 정정 ⑧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정보통신과	1.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 확인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③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④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정리 ⑤ 재검사 실시(보완지시) ⑥ 수수료 ⑦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 동법 제36조제2항 동법 제36조제3항 동법 제36조제4항 동법 제36조제5항 동법 제57조 동법 제75조제3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주민생활과	1.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③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④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⑤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 ⑥ 과태료의 부과 ⑦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현황보고 ⑧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⑨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직업안정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2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①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주택법 제7조제1항 제3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위생과	1.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	의료보호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5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행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각종 급여지급 ② 행려자 발생처리 및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의료급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3.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개장허가(무연분묘) 및 개장신고 ② 공설·공동묘지 관리 ③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 문중) 설치 인·허가(변경)업무 ④ 사설납골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 신고(변경)업무 ⑤ 공설묘지의 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서 발급 (동에 한함.) ⑥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동에 한함.) ⑦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 (동에 한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동법 제8조, 제23조
	4.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단속, 과태료 부과 ②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③ 시설 입·퇴소 의뢰 ④ 각종 급여지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7조 장애인 복지법 제6조, 제49조, 제5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위생과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종 냉동냉장업, 식품소분·판 매업종 기타식품판매업, 유 통전문판매업, 소분업, 용 기포장류 제조업, 위생등급 업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 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신고(허가),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영업자 지위승계 ③ 영업의 폐업신고 ④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부과업무 등 포함) ⑤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업무 ⑥ 무신고식품영업 등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⑦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⑧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55조, 제58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69조 동법 제71조의2
	6.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재교부의 경우 최초교부권자가 교부) ② 조리사의 면허취소등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 제63조
	7.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 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숙박업·목욕장업 제 외) 및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 ③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 ④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부과업무포함) ⑤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1항 동법 제3조의2항 동법 제3조 동법 제10조,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복지위생과	7.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단, 숙박업·목욕장업 제외) 및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 이·미용사 면허취소등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⑦ 이·미용사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다만, 최초교부 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 시·도에서 교부하고, 1983년 7월이후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한다.)	동법 제7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8.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 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 및 변경신고 ②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③ 폐업, 재개업 ④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법 제4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20조, 제23조
가족여성과	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모·부자복지법 제12조
	2.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② 아동 등에 대한 조사 ③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④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⑤ 소년소녀가정지원 ⑥ 가정위탁 아동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4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아동복지법 제10조 동법 제1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가족여성과	3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③ 비용의 보조금 등 지급 ④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⑤ 지도와 명령 ⑥ 보고와 검사 ⑦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⑧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⑨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⑩ 청문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동법 제49조
	4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 ② 청소년지도위원운영 및 관리 ③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기본법 제8조 동법 제27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5 노인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노인 건강진단 실시 ② 경로우대사업의 실시 지원 ③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④ 교통수당 지급 ⑤ 상담 및 시설입소	노인복지법 제27조 동법 제12조, 제2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노인복지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가족여성과	5 노인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제외) ⑦ 가출·행려 노인 업무 ⑧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⑨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⑩ 저소득 노인 후원·결연사업 ⑪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 ⑫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 ⑬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⑭ 노인회 분회 운영·활동비 지원 ⑮ 월동난방비 지급 ⑯ 가정도우미 지원 ⑰ 노인일거리사업 추진 ⑱ 노인일자리사업 ⑲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감독	동법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3조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5조
	6 어버이날 행사	① 행사계획 및 추진	노인복지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문화관광과	1. 영화상영신고	① 영화상영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통관련업 소양교육 ② 모범유통관련업자 지정 ③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④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 등록 ⑤ 유통관련업 등록증재교부 ⑥ 유통관련업 폐업신고 ⑦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⑧ 유통관련업소 자율지도요원 위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5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1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4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3.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판, 인쇄소 신고 및 변경사항 ②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교육체육과	1.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체육 육성사업 (구청 단위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2. 체육행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육행사 추진 (구청 단위 체육행사에 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동법 제8조
	3.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회원모집 ② 회원의 보호 ③ 신고(변경)수리 ④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⑤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⑥ 시정명령 ⑦ 등록취소 등 ⑧ 청문 ⑨ 수수료 ⑩ 벌칙 ⑪ 양벌규정 ⑫ 과태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의2 동법 제31조의3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4조
	4.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구청의 시설에 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업지원과	1.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②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③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④ 담배판매업등의 휴·폐업 ⑤ 담배 도·소매인 취소에 대한 청문 ⑥ 담배 도·소매인의 보고 및 관련장부 등의 확인 ⑦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⑧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⑨ 담배도매업 등록 ⑩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⑪ 벌칙, 양벌규정 ⑫ 과태료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2조의2 동법 제22조의3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제3항 동법 제25조의4 동법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27조의3, 제32조 동법 제28조
	2. 공장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장의 등록 및 사후관리 (다만, 500㎡미만의 승인대상의 공장) ② 공장의 등록의 변경 (다만, 500㎡미만의 승인대상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 공장등록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장등록의 취소 (다만, 500㎡미만의 승인대상의 공장)	동법 제17조
	4. 무허가공장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동법 제5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업지원과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사업 허가 ② 판매사업 변경허가 ③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④ 동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⑥ 동사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⑦ 동사업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⑧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 동법 제3조제3항 동법 제8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9조 동법 제29조, 제34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27조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사업 허가 ② 판매사업 변경허가 ③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④ 동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⑥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⑦ 동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⑧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동법 제4조제3항 동법 제8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20조
	7.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농축산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 ② 양곡가공업의 지도, 단속 ③ 과태료 부과징수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36조
	2.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판매업 등록신청 ② 등록증의 재교부 ③ 등록의 취소 ④ 행정처분 ⑤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농약관리법 제3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동법 제7조 2항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동법 제25조
	3. 농약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징수	농약관리법 제40조 2항 동법시행령 23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② 처분명령의 유예 ③ 청문 실시 ④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제0조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55조 농지법 제62조
	5. 농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 제20조
	6.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농지법 제2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농축산과	7.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및 변경 ③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④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⑤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등) ⑥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	농지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39조, 42조 동법 제56조
	8. 축산업등록에 관한 사항	① 부화업, 종축업 등록 ② 계란집하업 등록 ③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법 제20조
	9.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초지조성허가 ② 초지전용허가 ③ 초지관리 실태조사	초지법 제5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10. 가축통계	① 가축통계조사	농림통계조사규칙 (농림부령 제1384호)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축산과	1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에 관한 사항	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②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항 변경신고 ③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고	축산법 제6조
	12. 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① 동물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④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⑥ 과태료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보호법 제5조 동물보호법 제9조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1조 동물보호법 제26조
	13. 수산 및 내수면 인허가에 관한 사항	① 내수면어업허가 ② 내수면 어업신고(변경, 폐지) ③ 어선등록 ④ 어선관리 ⑤ 수산동식물이식승인 ⑥ 수산가공업신고 ⑦ 양어장 신고	내수면어업법 제9조 수산법 제44조 어선법 제7조 어선법 제5조 수자원보호령 제11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1조
	14.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사항	①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② 축산물운반업 변경허가 ③ 축산물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④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 ⑤ 축산물운반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축산과	15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② 식육판매업 변경신고 ③ 식육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④ 식육판매업 지위승계 ⑤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⑥ 식육부산물판매업 변경신고 ⑦ 식육부산물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⑧ 식육부산물판매업 지위승계 ⑨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⑩ 우유류판매업 변경신고 ⑪ 우유류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⑫ 우유류판매업 지위승계 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⑭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변경 신고 ⑮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⑯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지위승계 ⑰ 축산물판매업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16 동물약국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 ② 동물약국 등록사항등의 변경 ③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약사법 제6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 동법 제16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 동법 제20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농축산과	17. 동물용 의약품 등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신고	약사법 제26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3조
		②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동법 제26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
		③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업	동법 제32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
	18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 관련 행정처분	① 승인, 등록의 취소	약사법 제69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
		② 과징금 부과	동법 제71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
	19 동물병원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병원개설 신고	수의사법 제17조
		② 동물병원 신고사항 변경	동법 제17조
		③ 동물병원 휴업, 폐업, 재개업	동법 제18조
		④ 동물진료업의 정지	동법 제33조
		⑤ 과태료 부과	동법 제4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산림휴양과	1. 산불예방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입산허가 ②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③ 산불예방활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33조
	2. 산지정화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지정화활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② 사법경찰 업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5조
	4. 등산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등산로 재정비 및 관리 ② 산악구조대의 운영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제28조
	5. 푸른숲 선도원에 관한 사항	① 푸른숲선도원 선발계획 보고 ② 푸른숲선도원 명단보고 ③ 푸른숲선도원 하기수련대회 계획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자원관리과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고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규격봉투미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에 관한 사항 ③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단속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8조
	2.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①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3.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중용 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거 용기 청결유지등에 관한 업무 ③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수거일자 지정등에 관한 사항 ④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⑤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감면, 채납처분에 관한 사항 ⑥ 환경미화원 고용 및 관리감독 ⑦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대행비 지급	폐기물관리법 제44제1항 동법 제44제1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폐기물관리법 제44제3항 용인환경미화원고용 및 복무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조
	4.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용인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자원관리과	5 사업장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 동법 제17조
	6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	①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
	7 나눔장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장터 확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4조
	8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② 재활용품 판매장 지도·관리 ③ 재활용품관련 차량 및 음식물차량 관리 ④ 적화장 관리(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제4조 동법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9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관리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조 내지 제15조, 제68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13조, 제15조
	10.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40조, 제41조,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계획과	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발행위의 허가 및 불허가 (규모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②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연장 및 명의 변경 ③ 토석채취허가 ④ 물건의 적치허가 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⑥ 불법토지형질변경 고발 ⑦ 토지분할 허가 ⑧ 개발행위의 준공 ⑨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⑩ 개발행위등 민원처리 의견조회 및 의견회시 ⑪ 개발행위등 민원처리 보완 및 자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의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 계획업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②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4조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계획과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23조
	5 개발제한구역 지도·감독	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②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③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6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취하 반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③ 토지거래허가 일반업무 ④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 ⑤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⑥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⑦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⑧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 ⑨ 포상금의 지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동법 제120조 동법 제118조 동법 제124조 2항 동법 제144조 2항 내지 5항 동법 제144조 6항 동법 제124조 2항 동법 제124조 2항 동법 제124조 3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계획과	7.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②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③ 부동산중개업 이전(명칭변경)신고 ④ 부동산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⑤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신고 ⑥ 업무보충(변경)설정 신고 ⑦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⑧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⑨ 부동산중개업 과태료처분 ⑩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⑪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⑫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 ⑬ 포상금의 지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1항 내지 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제35조 내지 제40조 동법 제35조 내지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 제35조 내지 제40조 동법 제35조 내지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 제35조 내지 제40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46조
	8.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에 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도시계획과		③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동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동법 제13조
		⑥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동법시행규칙 제7조
		⑦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	동법 제11조제11항
		⑧ 개별공시지가의 정정대상 토지조사	행정지시
	9.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확인조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③ 과징금 물납 허가	동법시행령 제4조
		④ 이행강제금 부과	동법 제6조
		⑤ 과징금 채납 처분	동법시행령 제3조 5항
	10. 부동산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②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조, 제11조
		③ 부동산 거래의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④ 신고내역 조사	동법 제27조 2
		⑤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동법 제28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계획과	11. 외국인토지 취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외국인토지 취득·계속보유신고 및 허가 ②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주택의 거래 신고 ② 신고내용의 조사 등 ③ 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중증, 종교 기타단체)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동법 제9조 주택법 제80조의2 동법시행령 제107조의3 동법 제80조의3 동법 제101조의2 동법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도시개발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① 택지개발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도시개발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디자인과 (신설 2010. 4. 29)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한다)	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⑤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⑥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40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⑦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취소 ⑧ 허가·신고·안전도검사 및 옥외 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 징수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⑪ 행정대집행의 특례	동법 제13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동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주택과	1.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①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②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①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업무 ②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처분 ③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④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⑤ 단지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 ⑥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⑦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⑧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 ① 농어촌 주거환경	주택법 제50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 주택법 제46조, 제59조 주택법 제101조 주택법 제43조, 제5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제98조내지 제101조 주택법 제55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건축과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②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③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④ 건축협의를 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⑥ 적용의 완화 ⑦ 기존건축물의 특례 ⑧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등 ⑨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⑪ 가설건축물의 허가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신청규모가 6개층 이하로서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①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②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③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④ 건축협의를 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⑥ 적용의 완화 ⑦ 기존건축물의 특례 ⑧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등 ⑨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⑪ 가설건축물의 허가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3.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③ 공작물 축조신고 ④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⑤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건축과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② 대수선 허가신고 (신청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 ④ 시설물 유지관리(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5. 건축물대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②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③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④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⑤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등 ⑥ 건축물대장 등조본의 발급 및 열람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
	6.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대수선의 위임범위에 한한다)	① 공사중지 ② 시정명령 ③ 고발 ④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⑤ 재산압류 ⑥ 공매처분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7.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한한다)	① 무허가 건축물 예방 및 단속 ② 무허가 건축물 철거 ③ 행정대집행 업무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8. 사용승인된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조치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① 용도변경 ②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③ 본래의 기능유지 관리	건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도시공원과	1.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공원 관리 및 재정비 ② 소공원관리 ③ 타 법률에 의한 공원협의 ④ 어린이공원 소공원 점용허가 및 협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제19조
	2.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완충녹지조성 ② 경관녹지조성 ③ 녹지재정비 및 관리 ④ 녹지운영 및 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⑤ 녹지점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⑥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사항	동법 제36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3. 가로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② 이식 및 제거에 관한 사항 ③ 피해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9조의2
	4. 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쉼터조성 및 관리	
	5. 도시녹화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녹화사업 시행 및 계획 ② 추진실적보고 ③ 타 법률에 의한 조정협의 ④ 나무은행 운영 ⑤ 생태서식공간 창출에 관한 사항 ⑥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 ⑦ 관상수 및 무궁화 관리 ⑧ 광장(미관, 교통), 공공용지 조성관리 ⑨ 학교숲 조성 및 관리	
	6. 꽃식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꽃식재 계획 및 시행 ② 사업시행 ③ 추진실적보고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교 통 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징수 ▪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통근관리인 선임 등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 내역 확인조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6조 동조례 제8조 동조례 제9조 동조례 제12조 동조례 제13조 동조례 제14조
	2.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②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③ 비송사건 이첩 ④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동법 제115조의2 동법시행령 제72조의3 도로교통법 제6조
	3.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포함) ② 주차장(기계식, 노상, 노외)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③ 거주자 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교통과	4 무단방치 차량관리	① 무단방치차량 신고 접수 ②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③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자동차관리법제26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제36조
	5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 포함)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규칙 제39조
	6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연간단가 계약포함) ②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③ 일방통행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3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 로 과	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②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제82조
	2.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에 관한	① 도로점용허가 ②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고발	도로법 제40조 동법 제43조
	3. 도로건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폭12m이하) ② 도로교량 위·수탁사업 추진(12m이하) ③ 도로 및 교량 확포장 사업 ④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⑤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폭 12m 이하) ⑥ 도로공사관련 위·수탁보상업무 ⑦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⑧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⑨ 도로·교량 유지보수 관리업무 ⑩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 ⑪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⑫ 자전거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⑬ 보행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⑭ 동주민센터 발주공사 지도감독 ⑮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도로법 제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도로과	4 가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② 과적차량 지도단속 ③ 설해대책 사업 추진 ④ 수로원 지도감독 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⑥ 접도구역 관리 ⑦ 도로소파보수 및 정비 ⑧ 도로표지판 관리 ⑨ 비법정도로 관리	도로법 제9조
	5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 천 과	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지방 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소하천점용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소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②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① 하천점용허가 ② 하천점용료 부과·징수·고발 ① 소하천부지사용료부과 및 조정 ② 소하천부지사용료 채납세 징수 ③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 ① 소하천 점·사용허가 ① 공유수면의 관리 ② 공유수면 사용허가 ③ 사용료의 징수 ④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 ⑤ 권리, 의무의 이전 등 ⑥ 허가의 취소 등 ⑦ 조사 등 ⑧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⑨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변경 및 최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제82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지방세법 제28조 용인시재무회계규칙 제45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동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환경과	1. 생활악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악취의 규제(개선권고 등) ②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악취방지법 제4조 동법 제15조
	2. 특정공사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②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③ 생활소음진동발생자 및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내에 대한 조치명령 ④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3조, 제29조 동법 제20조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1 내지 제6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 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
	4. 토양오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②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③ 보고 및 검사 등 과태료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6조의2
	5.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① 야생동물 밀렵단속	야생동·식물보호법 제9조, 제10조
	6.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①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유지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 경 과	7.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대기·수질 복합시설 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3종내지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①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수리 ②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③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⑤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이 명령 ⑥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⑦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⑧ 보고명령 및 검사 ⑨ 과태료의 징수 ⑩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5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난안전과	1. 자연재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②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④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⑤ 재난상황 보고 ⑥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⑦ 응급조치의 지원 등 ⑧ 재난상황기록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동법 제33조제4항 동법 제66조 동법 제7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6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상 수 도 사 업 소 급 수 과	1. 지하수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②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등 ③ 허가의 취소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 3 동법 제9조의4 동법 제10조
	2.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②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오염 유발시설 조치 ③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 등 ④ 타인토지에 출입 등 ⑤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⑥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⑦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동법 제14조, 제5조 동법 제16조, 제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동법 제20조, 제21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9조 내지 제41조
	3. 지하수개발·이용사업의 등록		동법 제22조
	4.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동법 제27조
	5.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설물 유지관리 ②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 수질검사 성적서 홍보 및 게시	먹는물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 수 도 사 업 소 하수관리과	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수배출량의 조사 ② 하수배출량의 산정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④ 부과액 조정 신청 접수 및 결정 ⑤ 하수도사용료 채납관리	하수도법 제65조
하 수 도 사 업 소 하수시설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명령 및 조사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인·허가, 신고사항에 한한다) ③ 공공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④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⑤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 설치준공 ⑥ 점용료 산정자료 제출명령 및 조사 ⑦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⑧ 인허가 관련법 협의 ⑨ 점용료의 징수 ⑩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하수도법 제21조의2 동법 제23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4조
	2. 오수(단독)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에 관한	①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② 오수(단독)처리시설 준공검사 ③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하수도 사업소 하수시설과	3 축산폐수시설 설치(변경) 신고, 허가(변경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에 관한	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허가 ②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③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동법 제24조의2 제25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4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축산폐수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에 관한	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②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동법 제14조의2, 제38조 동법 제28조, 제29조
	5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가족사용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② 가족사용 제한 및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0조 동법 제34조
	6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개방화장실 설치 및 관리 ②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③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관리 ④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 명령 ⑤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지도 ⑥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⑦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제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0조, 제21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차량등록 사 업 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②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폐지 신고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⑤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교부 ⑥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⑦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⑧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 ⑨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⑩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⑪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99조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동법 제9조, 제52조 동법 제18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동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동법 제7조, 제52조 동법 제26조, 제52조 동법 제28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09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10조 동법 제84조

[별표 3] <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 정 과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2.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4.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과태료에 대한 다음의 권한 6.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대 편성(기술지원대 제외) ② 소규모 통·리 지역 민방위 대 통합 편성 ① 관내 통·리 민방위대장 감독 ① 지역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대상자 승인 ①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① 민방위대 동원명령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제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2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동법 제34조 동법 22조
세 정 과	1. 시세부과·징수 사무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 발급 ②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③ 체납액 징수 ④ 재산세 관세변동 자료 정리 및 제출(읍면장에 한함) ⑤ 기타 시세 중과자료 정리 및 제출(읍면장에 한함) ⑥ 시세 신고납부 독려 (읍면장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동법 제51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181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조례 제12조 시세조례 제1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주민생활과	1. 주민등록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비치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기록 ③ 주민등록번호 부여 ④ 주민등록표 재작성	주민등록법 제7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7조 동법 제22조
	2. 각종 신고서 접수	① 각종 신고서 접수	동법 제10조
	3.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등	①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동법시행령 제13조
	4.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본적지 통보	동법 제14조
	5.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6. 주민등록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③ 습득 및 회수주민등록증 보관 및 인계	동법 제24조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7.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동법 제21조의4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복지위생과	1. 매·화장 및 묘지 관리에 관한 권한	① 매·화장 신고 ② 공설묘지의 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 증명서 발급(읍면장에 한함)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읍면장에 한함) ④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읍면장에 한함)	
가족여성과	1. 경로당에 관한 권한	① 경로당 설치, 변경, 폐·휴지 신고 ② 경로당 시설관리 및 지원 ③ 운영·난방비 지급 ④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⑤ 경로당 사업의 정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제4조 동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43조
	2.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권한	①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3. 모자가정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① 모자가정 상담 및 보호조치	모자복지법 제1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축산과	1. 농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읍면장에 한함)	농지법 제20조
	2.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읍면장에 한함)	농지법 제23조
	3.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읍면장에 한함)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및 변경(단 제1항1호규정의 시설설치에 대하여 읍면장에 한함) ③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읍면장에 한함) ④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읍면장에 한함) ⑤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 등 읍면장에 한함) ⑥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읍면장에 한함) ⑦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읍면장에 한함)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제39조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제39조, 42조 농지법 제56조 농지법 제4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자원관리과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관리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읍면장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읍면장에 한함) ② 공공용쓰레기 수집과 쓰레기 용기의 청결유지 (읍면장에 한함) ③ 생활폐기물 배출행위 및 수거일자 지정 (읍면장에 한함) ④ 생활폐기물 불법소각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읍면장에 한함) ⑤ 청소장비 및 시설관리 (읍면장에 한함) ⑥ 환경미화원 관리 및 지도감독 (읍면장에 한함) ⑦ 국토대청결추진업무 ⑧ 봉투판매소지정 및 지도점검 ⑨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 수령 배부 및 마을별 대청소 일정지정 ⑩ 대형폐기물 납부 필증 교부 및 판매 ⑪ 생활보호 대상자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	용인시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 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7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동조례 제3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계획과	1.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에 관한 다음 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 축 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에관한 사항(단, 옥상간판, 네온류를 사용한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읍면장에 한함) 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함) 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함)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읍면장에 한함) ⑤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 취소(읍면장에 한함) ⑥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읍면장에 한함) ⑦ 행정대집행의 특례 (읍면장에 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3
	2. 건축물대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11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차량등록 사 업 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읍면장에 한함) ②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폐 지 신고(읍면장에 한함)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읍면장에 한함)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읍면장에 한함) ⑤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교부(읍면장에 한함) ⑥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읍면장에 한함) ⑦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읍면장에 한함) ⑧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이 의신청 수리(읍면장에 한함) ⑨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읍면장에 한함) ⑩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읍면장에 한함) ⑪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읍면장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99조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동법 제9조, 제52조 동법 제18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동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동법 제7조, 제52조 동법 제26조, 제52조 동법 제28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09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10조 동법 제84조